

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63
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2008.5.
제출자 양주시장

□ 제안이유

- 가.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“양주시 기업 지원센터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나.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하여 기업하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
-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“양주시 기업 지원센터”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기업지원센터 (안 제3조 내지 제7조)

- 기업 지원센터, 기업현장기동반, 원 스톱 처리회의, 기업애로 발굴·처리 등

다.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(안 제8조)

-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 공유, 처리상황 보고회, 선진사례 벤치마킹,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

라. 예산확보 등(안 제 9조)

- 기업애로 지원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자금, 운영비 등 예산확보 등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“양주시 기업지원센터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기업지원센터” 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주시에서 운영 하는 “맞춤형 기업지원센터” (이하 “지원센터” 라 한다)을 말한다.
2. “관내기업” 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주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.
3. “기업현장기동반” 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와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기동조직을 말한다.
4. “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협의회” 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.

제3조(기업 지원센터) ①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업애로 처리담당을 총괄 하기 위하여 양주시산업경제과 내에 “맞춤형 기업지원센터”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한다.

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기업현장방문, 인터넷, 전화상담,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 적극 발굴 해소
2.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 도출
3. 기업애로 해소추진 및 지원 상황 독려
4.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
③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협의회)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“양주시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협의회” 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운영 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양주시 관련 실과장 및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하되, 협의회장은 주민 생활지원국장이 되며, 부회장은 회원중에 호선하여 결정한다.

③ 회의는 협의회장이 주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되,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

또는 부시장, 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.

제5조(기업현장기동반)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 현장 기동반(이하 “현장기동반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한다.

② 현장기동반은 기업지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한다.

③ 현장 기동반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
1. 기업애로 사항의 빠른 현장 조사
2. 기업애로 처리방안 검토
3.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
4.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(유관기관의 참여) ① 시장은 현장기동반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기업애로 발굴·처리)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, 인터넷·전화상담,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) ① 시장은 매년 기업애로 사항 해소 및 지원 처리 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예산 확보) 시장은 기업애로 사항 지원 및 센터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자금,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산업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장	산업경제과장
	직위·성명	곽홍길
	담당	투자유치담당
	직위·성명	송윤찬
담당자		최향임
직위·성명		(행정 2412)